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6.2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78회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3년 6월 24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전용봉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허사업 제한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1) 안 제15조에서는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기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함.
- (2) 안 제51조5호에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회의 해촉 규정을 추가함.

- (3) 안 전반에 대하여 “일시에”를 “한꺼번에”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통신일부인을 날인받아”를 “접수인을 날인 받아”로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조례안은 2013.1.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2013. 4. 1일자로 시행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도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